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 00. ~ 1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법 제62조제2항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
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
재지가 속한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하 이 조에
서 “재난”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
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에서 재난 또는 경영상 어려움 등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가 정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재난 또는 경영상 어려움 등
을 이유로 다시 금액을 정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재산 사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할 금액을 정하였으나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일 이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이 영 시행일을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날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 대상) ① ~ ③ (생략)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 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속한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재난(이하 이
조에서 “재난”이라 한다)
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기
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회계
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
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재난 또는 경영상 어려움
등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
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재난 또는 경영상 어
려움 등을 이유로 다시 금
액을 정할 수 없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락처	(044) 202 - 7559